



## 일본 DC형제도 개혁과 함의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 DC형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개인형 IRP 가입범위 확대와 자산운용 체계 개선 등의 퇴직연금제 개선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일본은 2017년부터 개인형 DC제도 가입자 범위에 주부 등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군별 소득공제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DC형제도 자산운용의 편중 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의무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에 장애요인이 되는 지나치게 많은 운용상품 수를 제한함. 디폴트 옵션제도의 자동가입 절차를 도입하고 디폴트 옵션 운용 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일본은 확정각출연금법 개정<sup>1)</sup>에 따라 2017년부터 퇴직연금 적용범위 확대와 자산운용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DC형제도 개혁을 실시함.<sup>2)</sup>

- 주요 개혁 배경은 혼인의식 변화 및 경력단절 여성 증가에 대비한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국민연금의 거시경제 급여슬라이드<sup>3)</sup> 시행과 직역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는 사적연금 역할 확대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 또한 비정규 근로자의 이·전직 증가에 대비한 퇴직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아베정부의 저축에서 투자 활성화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자산운용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였음.
- DC형제도 개혁의 핵심은 ① 개인형 DC제도<sup>4)</sup> 가입범위 확대, ② 투자교육 강화, ③ 자산운용 체계 개선, ④ 디폴트 옵션제도 개선으로 요약됨.

■ 첫째, 개인형 DC제도<sup>5)</sup> 가입범위를 전업주부 등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가입 장려를 위해 세제

1) 確定拠出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6. 5. 24).

2)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7년 1월 5일 입법 예고한 바 있음.

3) 연금액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금 지급액 인상률에 물가 또는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임.

4) 일본 개인형 DC제도(정식명칭은 확정각출형 개인형)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유사함.

지원을 제공함.

- 가입범위를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전업주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개인형 DC제도 추가 가입을 허용함.
- 또한 소득공제 지원제도를 새로 가입범위에 편입된 대상에게 확대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군별 가입 가능한 공적·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 적용함(〈표 1〉 참조).
  - 전업주부와 공무원에 대해 연간 각각 27.6만 엔과 14.4만 엔 한도로 소득공제를 차등 지원

〈표 1〉 일본 개인형 DC제도 개정 전후 가입범위와 소득공제 한도

개정 전		개정 후	
가입 범위	소득공제 한도(연간)	가입 범위	소득공제 한도(연간)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근로자	27.6만 엔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근로자	27.6만 엔
자영업자	81.6만 엔	자영업자	81.6만 엔 <sup>1)</sup>
-	-	기업형 DC 가입 근로자 병행 가입	24.0만 엔
		기업형 DC·DB형 가입 근로자 병행 가입	14.4만 엔
		전업주부	27.6만 엔
		공무원, 사립교직원	14.4만 엔

주: 1)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과 개인형 DC의 합산 소득공제 한도액임.  
 자료: 厚生労働省(2017. 1), 確定拠出年金制度の主な改正(2017年1月1日施行).

■ 둘째, 현행 DC형제도에서 사업주의 투자교육 미실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입자 대상 교육실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

- 일본 확정각출연금법<sup>6)</sup>은 사업주가 DC형제도 가입자에게 가입 시 교육과 가입 후 계속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율이 57.9%에 불과한 수준임.
- 가입자의 합리적인 운용상품 선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계속교육의 법적 지위를 기존 배려의무에서 한 단계 높은 노력의무로 개정함.
  - 2018년 6월까지 하위 법규에서 세부적인 교육 기준을 마련할 예정

5) 개인형 DC제도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개선과 퇴직급여 간 통산성을 위해 미국 IRA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 납입금에 대한 일정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됨.  
 6) 법 제22조.

■ 셋째, DC형제도의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의무 운용 폐지, 상품 수 제한 등 자산 운용 체계를 개선함.

- DC형제도 규정에서 가입자 자산운용시 기존의 하나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 의무 조합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위험-수익 특성이 서로 다른 운용상품으로 조합하도록 의무화 함.<sup>7)</sup>
- 또한 운용상품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가입자의 자산운용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연금규약에서 채택하는 운용상품 수를 노사합의에 의해 일정 범위로 제한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넷째, 현행 DC제도에서 디폴트 옵션<sup>8)</sup>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운용 상품이 조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함.

- 일본은 2002년부터 DC형제도의 디폴트 옵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있어 기업 대부분(96.2%)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편중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운용상품을 조합하도록 기업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디폴트 옵션 가입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상품운용 안내(3개월 이내), 가입자 무응답 시 재안내(약 2주 내외), 무응답 시 디폴트 옵션 자동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

■ 일본 DC형제도 개혁은 IRP제도 활성화, 연금자산 편중운용 개선,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줌.

- 첫째, 일본 전업주부의 개인형 DC 가입범위 확대와 세제지원은 이혼·재혼,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불안한 여성계층이 스스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의 롤 모델인 미국 IRA<sup>9)</sup>에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배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함.
- 둘째, 향후 IRP 적용범위 확대시 미국과 일본과 유사하게 세제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직군별 공·사 연금제도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액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7) 종전 확정각출연금법(제23조)은 개인형 DC제도 자산운용 시 하나 이상 원리금보장상품과 3개 이상 자산운용상품을 의무적으로 조합하도록 명시함.

8) 퇴직연금 운용지식 및 노력부족 등으로 자산운용을 포기하는 가입자를 위하여 DC형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사전에 조합된 운용상품에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운용되는 상품을 의미함.

9)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셋째, 자산운용 편중 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의무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사전적 비율규제에서 사후적 자산운용 감독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향후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시 일본과 같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중 운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운용상품이 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